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에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에너지분야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업무의 성질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정직 인력 중 2명(별정직 6급 상당 1명, 별정직 9급 상당 1명)을 일반직 2명(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1명, 8급 또는 별정직 8급 상당 1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소속기관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표준공장 증설 및 민원처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1명(행정안전부 5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조선·해운산업 분야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1명(해양수산부 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4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 1명(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무역투자실**”을 “**산업혁신성장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무역투자실**”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④ 에너지분야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

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3 중 총계 “898”을 “901”로 하고, 별정직 계 “9”를 “7”로 하며, 비서(6급 상당) “2”를 “1”로 하고, 비서(9급 상당) “3”을 “2”로 하며, 일반직 계 “886”을 “891”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53”을 “255”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3”을 “184”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0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

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하며,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을 신설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898”을 “900”으로 하고, 별정직 계 “9”를 “7”로 하며, 비서(6급 상당) “2”를 “1”로 하고, 비서(9급 상당) “3”을 “2”로 하며, 일반직 계 “886”을 “89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8”을 “280”으로 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74”를 “175”로 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6 다음에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를 신설하며,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4 중 사.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총계 및 일반직 계 “8”을 각각 “9”로 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4의2 중 사.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총계 및 일반직 계 “8”을 각각 “9”로 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7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며, “제3호 제42조제3항”을 “제5호 제42조제5항”으로, “제4호 제42조제4항”을 “제6호 제42조제6항”으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4. 제4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
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
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
송통신사무관 1명)은 행정안전
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② 조선·해운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
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
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
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 설>

② -----

----- 2023년 2월 28일-----

-----.

③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
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

<신 설> ③ · ④ (생 략)	<u>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u> <u>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u> <u>충원해야 한다.</u> ④ <u>에너지분야 국가 주요 기반</u> <u>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u> <u>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u> <u>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u> <u>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u> <u>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u> <u>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u> <u>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u> <u>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u> <u>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u> <u>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1명)</u> <u>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u> <u>충원해야 한다.</u>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898</u>	• <u>901</u>	+3
•	•	•	
•	•	•	
별정직 계	<u>9</u>	<u>7</u>	-2
•	•	•	
•	•	•	
비서(6급 상당)	<u>2</u>	<u>1</u>	-1
•	•	•	
비서(9급 상당)	<u>3</u>	<u>2</u>	-1
일반직 계	<u>886</u>	<u>891</u>	+5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	<u>253</u> · ·	<u>255</u> · ·	+2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 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 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 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 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 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 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 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 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 ·	<u>183</u> · ·	<u>184</u> · ·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방재안전주사 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u> · ·	<u><신 설></u> · ·	<u>1</u> · ·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 ·	<신 설> · ·	<u>1</u> · ·	+1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u>898</u>		<u>900</u>	+2	
별	정	직	•	•	•	•	•
계			<u>9</u>		<u>7</u>	-2	
		•	•	•	•	•	•
		•	•	•	•	•	•
비	서	(6급	<u>2</u>		<u>1</u>	-1	
		상당)	•	•	•	•	•
비	서	(9급	<u>3</u>		<u>2</u>	-1	
		상당)	•	•	•	•	•
일	반	직	<u>886</u>		<u>890</u>	+4	
계			•	•	•	•	•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	<u>278</u> · ·	<u>280</u> · ·	+2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 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 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 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 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 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 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 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 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 ·	<u>174</u> · ·	<u>175</u> · ·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방재안전주사 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u> · ·	<u><신 설></u> · ·	<u>1</u> · ·	+1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u> <u>·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 방재안전서기</u> 또는 <u>별정직 8급 상당(비서)</u>	<u><신 설></u>	<u>1</u>	+1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u>9</u>	<u>8</u>	-1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사.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u>8</u>	<u>9</u>	+1
일반직 계	<u>8</u>	<u>9</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u>	<u>2</u>	+1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사.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u>8</u>	<u>9</u>	+1
일반직 계	<u>8</u>	<u>9</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u>	<u>2</u>	+1
·	·	·	
·	·	·	

[별표 7]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제42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1. 제42조 제1항 관 련 한시정 원(존속기 한: 2021 년 2월 28 일)	<삭 제>	
총계	1	<삭 제>	-1
일반직 계	1	<삭 제>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삭 제>	-1
2. 제4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2. 제42조 제2항 관 련 한시정 원(존속기 한: 2021 년 2월 28 일)	2. 제42조 제2항 관 련 한시 정원(존 속기한: 2 023년 2 월 28일)	

<u>3. 제4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u> <u>(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u>	<u><신 설></u>	<u>3. 제42조제3항</u> <u>관련</u> <u>한시정원</u> <u>(</u> <u>존속기한:</u> <u>2023년 2</u> <u>월 28일)</u>	
<u>총계</u> <u>일반직 계</u>	<u><신 설></u> <u><신 설></u>	<u>1</u> <u>1</u>	<u>+1</u> <u>+1</u>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u> <u>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u> <u>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1</u>	<u>+1</u>
<u>4. 제4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u> <u>(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u>	<u><신 설></u>	<u>4. 제42조제4항</u> <u>관련</u> <u>한시정원</u> <u>(</u> <u>존속기한:</u> <u>2023년 2</u> <u>월 28일)</u>	
<u>총계</u> <u>일반직 계</u>	<u><신 설></u> <u><신 설></u>	<u>1</u> <u>1</u>	<u>+1</u> <u>+1</u>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u>	<u><신 설></u>	<u>1</u>	+1
5. 제42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u>3. 제42</u> <u>조제3항</u>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 한: 2022 년 4월 30 일)	<u>5. 제42</u> <u>조제5항</u>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2년 4 월 30일)	
6. 제42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u>4. 제42</u> <u>조제4항</u>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 한: 2021 년 12월 3 1일)	<u>6. 제42</u> <u>조제6항</u>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1년 1 2월 31일)	